

2025

산림경영지도원 산림관계법규

엠북 자격증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★ 3시간 10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- ★ 최근 법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

도서명 : 산림관계법규

ISBN : 979-11-7393-006-5

발간일 : 2025-04-14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20,000원



산림관계법규

[목차]

제1권 산림자원법(p5)

제2권 임업진흥법(p141)

제3권 산림조합법(p211~381)

[약어]

청장은 산림청장

국가등은 국가, 지자체

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

중앙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시군구는 시, 군, 자치군 또는 시장, 군수,

자치구의 구청장

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
시군구 또는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군구
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
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지자체장은 시도지사, 시군구
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
진흥원은 한국임업진흥원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제1권 산림자원법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7)

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(p17)

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(p79)

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(p97)

제5장 보칙(p127)

제6장 벌칙(p134)

[약어]

시군구/청장은 시군구등이나 지방산림청장
소유자는 별도 명시없으면 산림소유자
복지진흥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
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거부등은 거부, 방해, 기피
면적단위는 제곱미터

[법 개정]

산림재해는 2026년 2월 1일 산림재난으로
변경

[참고]

기간내 신고수리, 인허가 여부나 처리기간

연장 통지안하면 기간(연장, 재연장 기간) 끝난
날 다음 날 수리, 인허가한 것으로 봄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5조

1. 목적

- 산림자원 조성/관리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 및 지속가능한 보전, 이용
- 국토 보전, 국가경제 발전, 국민 삶의 질 향상

2. 산림 경영/관리의 기본이념

-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
-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/경제/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
-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되게 경영/관리

3. 정의

가. 산림

1) 집단적으로

- 자라고 있는 입목/대나무와 그 토지
- 자라고 있던 입목/대나무가 일시 없어진

토지

2) 입목/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
사용된 토지

3) 상기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(늪과
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)

4) 임도(산림 경영/관리 위해 설치한 도로)

5) 단, 다음 제외

a) 산림농지, 초지, 주택지, 도로

b) 다음 토지에 있는 입목/대나무와 그 토지

- 과수원, 차밭, 꺾꽂이순, 접순 채취원

- 입목/대나무가 생육하는

· 건물 담장 안 토지

· 논두렁/밭두렁

. 하천, 제방, 도랑, 연못

나. 산림자원

- 국가경제, 국민생활에 유용한 다음 자원
- . 산림에 있거나 서식하는 수목, 초본류, 이끼류, 버섯류, 곤충류 등 생물자원
- . 산림에 있는 토석/물 등 무생물자원
- . 산림 휴양, 경관 자원

다. 산림사업

- 산림 조성, 육성, 이용, 재해예방, 복구, 복원 등 산림 기능 유지/발전, 회복을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,

- 도시숲, 생활숲, 가로수, 수목원 조성/관리 등
산림 조성/육성, 관리에 필요한 다음 사업

1) 임도사업, 산불예방/진화시설 등
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

2) 조림, 숲가꾸기, 벌채 등 산림
조성/육성/이용

3) 산림복원

4) 산불 예방/진화

5) 산지 보전/이용, 토석채취, 재해방지/복구

6) 백두대간 보호

7) 산림병해충 예방/방제

8) 국유림 경영/관리

9) 산림문화/휴양 시설 조성

10) 산림교육 시설 조성

1) 수목장림 조성/관리

2) 임업 구조개선, 임업진흥구역 지정, 산촌
진흥

3) 수목원 조성/등록/운영

4) 사방사업

5) 도시숲등(도시숲, 생활숲, 가로수) 조성/관리

6) 산림자원 조성/육성/관리, 산림의 공익기능
증진

- 생태숲 조성

- 산림생물 조사/관리, 보호/증식, 연구/개발
- 산림생물다양성 보전/관리를 위한 청장 인정
사업

라. 임산물

- 목재, 수목, 낙엽,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
- 조경수, 분재수
- 가지, 꽃, 열매, 생잎, 장작, 톱밥, 나무조각 등
수목의 일부분
- 대나무류, 초본류, 덩굴류, 이끼류
- 산림버섯, 떼
- 숯, 수액
- 톱밥숯과 수목/대나무를 태워 얻는 응축액
포함

- 합판, 단판, 섬유판, 집성재, 성형재, 마루판,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

마. 산림용 종자

- 산림이나 생물 산림자원에서 유래된 자원의 씨앗, 증식용 영양체, 종균, 포자

바. 산림복원

- 자연적/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원 상태에 가깝게 유지/증진되도록 구조/기능 회복

사. 기타

- 입목/벌채등은 입목 벌채, 임산물

굴취/채취(이하 벌채등)

- 포지는 묘목을 생산/관리해 배출

4. 산림의 경영/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

- 국가등은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
경영/관리 시책 수립/시행

- 소유자는 소유 산림을 기본이념을 존중해
경영/관리, 국가등의 시책에 협력

5. 적용 범위

: 산림이 아닌 토지에 다음 규정 전부/일부
적용

가) 채종림(종자 생산 위한 산림),

수형목(우량나무), 시험림

나) 임산물 사용제한

다) 입목 벌채/굴취 허가

- 입목/대나무 생육 논두렁, 밭두렁, 하천, 제방, 도랑, 연못 안 입목으로서 국토 보전과 입목 보호를 위해 시군구등이 지정/고시하는 입목에 한정

6. 산림의 구분

- 소유자에 따라 구분

가) 국유림은 국가, 공유림은 지자체나 공공단체가 소유

나) 이외는 사유림

7. 산림의 관할 행정청

-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 장
- 이외 국유림, 공유림, 사유림은 산림 소재지 지자체장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

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

6~12조

1. 소유자

- 산림기본법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평가

기준/지표에 맞게 관리 노력

2. 청장의 산림조림계획 수립/시행 등

가)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10년마다 수립/시행

나) 내용

- 기본목표, 추진방향
- 산림조림실적/전망
- 연차별 조림계획
- 산림조림사업 기술
- 산림조림사업 이력 관리 등 산림자원조성

다) 시행 성과, 사회/경제/지역적 여건 변화

등을 고려해 계획 변경

라) 계획 수립/변경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

조림 등 실태 조사, 현황 유지/관리

마) 계획 시행 자원 확보 노력

바) 수립/변경한 때

- 중앙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, 국회 소관

상임위에 제출 및 공표

사) 중앙기관장/시도지사에게 자료 요청

3. 산림지속성지수

-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 표시

가) 국가는 산림의 생태, 물리, 사회, 경제적

요소를 고려해 개발/공표 가능

나) 국가등은

- 산림 종류/특성에 따라 지수 유지/증진 계획 수립, 시행
-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시 지속성 회복 대책 강구

4. **산림인증**: 청장은,

-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과
-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과 가공품 사용 확대를 위해
- 산림경영과 임산물 생산/유통 인증제도 관련 시책 수립/시행

5. **산림의 기능별 구분/관리**